

【 2015.01.08(목) 강원일보 】

저가수주 관행개선 목소리 높여

지역 건설업계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으로 그동안 저가 수주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부실시공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하자보수,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경우 하도급업체도 그 피해를 함께 떠안으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저가 수

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하는 제도인 정부의 최저가낙찰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물며 겨자 먹기로 저가로 수주하는 것은 이익이 없더라도 공사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행탓”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낙찰률이 60% 후반에 그치는 등 저가 수주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7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문건설업체 20여개 영업정지 위기

【삼척】속보=삼척지역 전문건설업 20여개 이상 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삼척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해 자본금 등 등록기준이 미달된 혐의가 있는 관내 57개 업체를 통보해 시가 사실조사(본보 2014년 12월 22일자 20면 보도)를 벌인 결과 7일 현재 31개 업체는 혐의가 없는 반면 17개 업체는 자격 미달, 나머지 9개 업체는 서류를 아직 제

삼척시 자본금 등 등록기준미달…경영난 우려

출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기준이 미달된 17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는 이미 영업정지에 들어 갔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오는 20일까지 서류를 받아 내달 중 청문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에 5개월간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가 2013년 관내

1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8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영업정지, 나머지 6개 업체가 등록말소된 사례를 볼 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20여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또는 폐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올해도 예산 조기 집행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삼척시 또한 경기

침체 들판구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건설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영업정지 대상 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인 향후 5개월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을 상반기 중에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황만진기자 hmj@knews.co.kr

동부건설 협력업체 피해 현실화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정관리 맨 자산 등 동결 90여곳 업체 자금난 우려

법원이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중소 하도급 건설사 등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

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도내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동부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기 때문에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철도 등 공공부문 공사 현장 9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법원의 회생계획안이 나오는 수개월 동안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11구간 협력사인 춘천의 모 업체는 동부건설에 총 5억4000만원의 골재를 이미 납품했으나 이 가운데 7000만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4억7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수개월이 지난 뒤 법원의 회생계획안이 나오더라도 원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받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법원과 동부건설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납품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박현철

2015 강원경제 | 경제단체장에 듣는다 |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노력”

③ 정동기 강원건설단체 연합회장

수주물량 확보 역점과제 실적공사비 개선 공조도



-2015년을 맞는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을미년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건설인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주물량 확보’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역점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해부터 공사가 본격화된 겨울을 빠른 시설공사를 통해 발생되는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해 고용 및 물량 등을 창출하고 지역건설을 비롯한 강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활발히 개정논의 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일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미래 건설시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사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공사 도급관계 등에서 겪는 부당사례나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정이나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우리 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강원도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대·중소 상생협력 등 사회,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설인으로서 도민들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사업 확대 등 건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7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회원사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2015.01.08(목)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과 행정소송

Q

공기업 A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한 B업체에 대하여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종합 취

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업체는 공기업 A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업체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A

공기업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참조).

공기업 A의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라고 하더라도 위 근거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담당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기업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기업 A가 B업체에 한 감점통보는 공기업 A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하여 감점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감점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건협 강원도회 신년인사회… 회원사 100여곳 참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정동기)는 7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사 100여곳
이 참가했다.